

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4일
신청인	상호 또는 법인명	등록번호	
	소재지	전화번호	
	대표자	생년월일	
	전문분야 종합: [] 종합 설계·사업관리: [] 일반 [] 설계등용역 (□설계등용역 일반*, □측량, □수로조사) [] 건설사업관리 *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: [] 계획·조사·설계 포함, [] 계획·조사·설계 제외 품질검사: [] 일반 [] 토목 [] 건축 [] 특수* * 품질검사(특수) 세부분야 선택 [] 골재 [] 레디믹스트콘크리트 [] 아스팔트콘크리트 [] 철강재 [] 섬유 [] 용접(방사선비파괴검사) [] 용접(초음파비파괴검사) [] 용접(자기비파괴검사) [] 용접(침투비파괴검사) [] 말뚝재하		
	재발급 신청사유 (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)		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헐어 못 쓰게 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(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
	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

처 리 절 차

